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6. 12. 19.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6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6.12. 6)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및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원 연장
 - 정 원 : 4명(일반5급 1, 8급 1, 9급 1, 기능10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정원 연장
 - 정 원 : 1명(일반7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 연장
 - 정 원 : 2명(일반7급 1, 8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정원연장
 - 정 원 : 2명(일반7급 1명, 8급 1명)
 - 개정내용 : 기간연장(2006.12.31 ⇒ 2007.12.31)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 완 섭)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 2004년 5월 25일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중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시범사업” 관련 전담인력 4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으며,

2005년 3월 21일 조례 제582호 부칙 제2조 중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되었으나 2005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되어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고, 관계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果：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및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원연장

- 정 원 : 4명(일반5급 1, 8급 1, 9급 1, 기능10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연장

- 정 원 : 1명(일반7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다.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정원 연장

- 정 원 : 2명(일반7급 1, 8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 (2006.12.31 ⇒ 2008.12.31)

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 정원

- 정 원 : 2명(일반7급 1, 8급 1)
- 개정내용 : 기간연장(2006.12.31 ⇒ 2007.12.31)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1398(2006.10.16)호

- 행정자치부 조직담당관-8631(2006.10.24)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509(2005.09.20)호

나. 예산조치 : 확보되었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생 략

- 사 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중 2006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인 집행기관의 정원 4명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 조례 제582호 부칙 제2조중 2006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인 1명(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중 2006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인 4명(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 및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중 2명(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2007년12월31일까지, 2명(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